

설립 자본금 기준 완화, 건설업체 난립 우려

토목공사업 경우 7억원→5억원
건축 5억원→3억5000만원 하향
신규 진입 문의 쇄도 업계 불안

정부가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자 신생업체 남발로 인한 지역 건설 시장 혼란 우려가 높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건설산업 혁신대책으로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토목공사업의 경우 기존 7억원에서 5억원, 건축공사업은 5억원에서 3억5000만원, 기계설비공사업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등 건설업체 설립에 기존보다 30%하향된 자본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699개 종합건설 사업체의 보유 자본금은 기존 6491억원에서 4535억원으로 1956억원 감소, 자본금 부담이 완화되지만 건설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신규 업체 남발과 한정된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으

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 위치한 전체 건설업체는 3871개로 전년(3713개) 대비 4.3% 증가해 전국증가율(4.1%)을 상회했다. 반면 올해 1분기 도내 건설 수주액은 616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6943억원) 대비 88.4% 감소, 전국감소율(9.4%)과 비교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건설시장 침체와 대규모 SOC 감소 등에 따른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 시행 이후 지난 19일

부터 도내 종합, 전문 등 건설협회에는 예비 건설사업자의 신규 진입이나 기존 업체들의 면허 추가를 통한 회사 확장 등의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넘게 쇄도하며 포화상태에 직면한 도내 건설업계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부실업체 증가를 막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액을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진입에 한계를 뒀지만 도내 건설업체 증가세는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윤

상수도관 노후 중장기 대책 세워야

-도내 급수관 23.2% 30년 초과, 종합대책 재점검을

2009년 정선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에 엄청난 급수난이 빚어졌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3개월여 동안 가뭄이 극심한 것입니다. 유사한 급수난을 겪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강원 남부권의 급수난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례 없이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특히 태백시의 급수난이 심각했는데 1월6일부터 4월2일까지 87일간이나 제한 급수가 실시돼 ‘물재난’으로 기록될 만 할 것입니다.

당시 급수 체계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아프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에서 붉은 녹물이나오는 ‘적수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녹물 현상은 20여일째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조치가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일단 노후배관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합니다. 수돗물 파동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둘러 원인 규명과 조치를 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강원도의 입장 또한

편안하지 않습니다. 결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급수 문제의 두 가지 큰 축은 용수를 확보하는 것과 공급 체계입니다. 두 가지가 완비돼야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갈수기에 대비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용수를 가정과 산업체에 유실 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고 때마다 노후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9년 강원 남부권 급수난 때도 수요 예측과 용수 확보 못지않게 급수 체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누수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밀폐된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급수관 문제는 단기 기간에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터지면 이미 늦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2017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상수도관 총 연장 1만 1407km 가운데 내구연한 30년을 초과한 노후관이 전체의 23.2%에 이릅니다. 인천(14.5%) 서울(13.5%) 경기는 물론 전국 평균 14%의 2배 수준으로 노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물 대책을 다시 점검하길 바랍니다.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Q (1) B건설은 C건설 등 11개 회사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A건설은 C건설을 승계하여 위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였습니다.

(2) 공동수급체 사이에 작성된 공동수급 운영협약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분담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B건설이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선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B건설은 기성금을 지급받았는데, A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건설은 공동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건설이 B건설에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는데, B건설은 A건설의 공동분담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A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집니다.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 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으면,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그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

체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공동수급체는 그 특약에 따라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 11개 회사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입니다. 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 B건설이 구성원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A건설의 B건설에 대한 분담금 채무는 출자의무에 해당하고 A건설의 B건설에 대한 기성금 채권은 이익분배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건설은 별도의 상계의 사표시 없이 공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A건설에 지급할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